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 - 0153호

2025년도 전문신문 발전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전문신문의 날'을 기념하여 전문신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개요

○ 목적 : '전문신문의 날(11.20)' 계기 전문신문 발전 유공자 발굴·포상

○ 행사명/시상일 : 2025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2025.11.20.(목)(예정)

○ 포상종류 : 정부포상, 장관표창

※ 포상규모 및 훈격 등은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 후 확정 예정

※ 2024년 포상규모(대통령표창 1매, 장관표창 5매)

2. 추천 대상자(공적 내용)

○ 전문신문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 장기간 전문신문 발행을 통하여 언론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 모범적인 전문신문 경영을 통해 공동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디지털미디어와의 융합으로 창의적 전문신문 문화를 선도한 자

3. 신청 자격

○ 전문신문의 발행인 또는 종사자(취재·편집·디자인·광고·행정 등)로서 전문신문의 위상 제고와 언론발전에 기여한 자로 전문신문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전문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 제외)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

○ 수공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25. 6월 말 기준)

4.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단체표창은 제외)

나.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사람은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포상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장관표창은 2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장관표창은 2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장관표창은 2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 단체표창 추천제한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5.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추천자 : 개인(본인 추천 포함) 또는 단체 등 제한 없음

- 추천자는 정부포상,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포상규모 및 훈격 등은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 후 확정 예정

-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 추천 가능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정부포상 동의서, 공적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서류 원본과 문서 파일을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함께 제출

○ 유의사항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6. 서식 배부 및 접수

○ 서식배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 접수처

- 등기 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전문신문 담당자

·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 센터 E동 407호 한국전문신문협회

- 전자 우편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 djfgjsj@korea.kr

· 한국전문신문협회 담당자 : kosna1964@naver.com

○ 접수기간 : **2025년 6월 4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7. 후보자 추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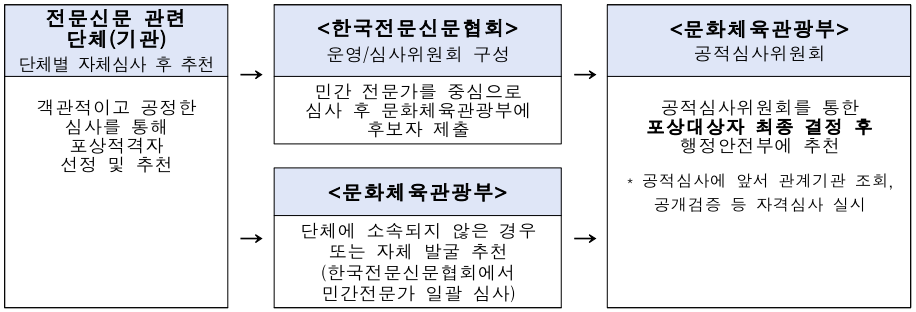

8. 수상자 발표(예정) : 2025. 10월 중 개별통지 예정(변경 가능)

9. 시상일자/장소(예정) : 2025. 11. 20.(목) 예정 / 한국프레스센터 예정

10. 기 타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20) 및 한국전문신문협회(02-334-7251)로 문의하시기 바람